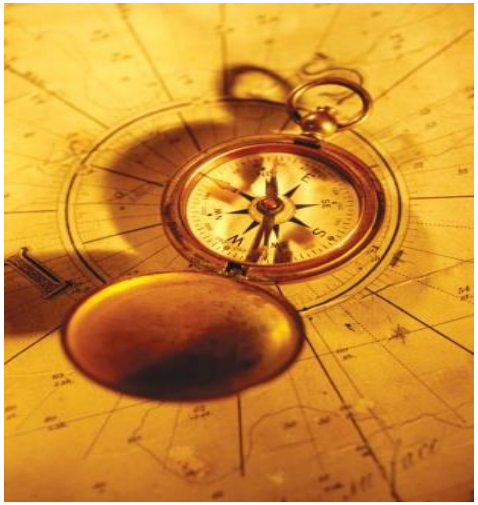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

VISION
전주비전대학교

2016. 10

윤리경영원 양세영 원장

(들어가며) 청탁금지법 시행+27일 !

※ 김영란법(제안자)
➔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정부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국회 제정)
➔청탁금지법(법제처)

-2015. 3 법안 통과
-2016. 7 헌법재판소 합헌 판정
-2016. 9 시행령 확정
-1년 6개월 유예기간 종료➔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청탁금지법 ☞

→ 대가성 관계없이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
→ 청탁 및 금품제공자도 처벌 가능
→ 행위기준, 상담,신고 등 처리절차 도입
→ 신고자 보호조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패예방 법률

1.기본 체계와 특성

1) 체계

- 전체 5개의 장, 총 24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장> **총칙** 부분은 목적(제1조), 정의(제2조), 국가 등의 책무(제3조), 공직자등의 의무(제4조)를 규정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부분은 부정청탁 행위유형(제5조제1항)및 예외사유(제5조제2항),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를 규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분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제8조), 신고 및 처리(제9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제11조)을 규정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제12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제13조 제14조), 신고자등의 보호 보상(제15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6조), 부당이득의 환수(제17조), 비밀누설 금지(제18조), 교육 홍보(제19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제20조)

<제5장> 징계(제21조), 벌칙(제22조), 과태료 부과(제23조), 양벌규정(제24조)

2) 특성

- 행동강령의 법제화 ➔ 형법의 특별법
- 대표적 부패행위 집중➔파급효과
- 민간부패 차단 ➔ 유발요인 제거
- 처벌<예방 기능 ➔ 공직자 보호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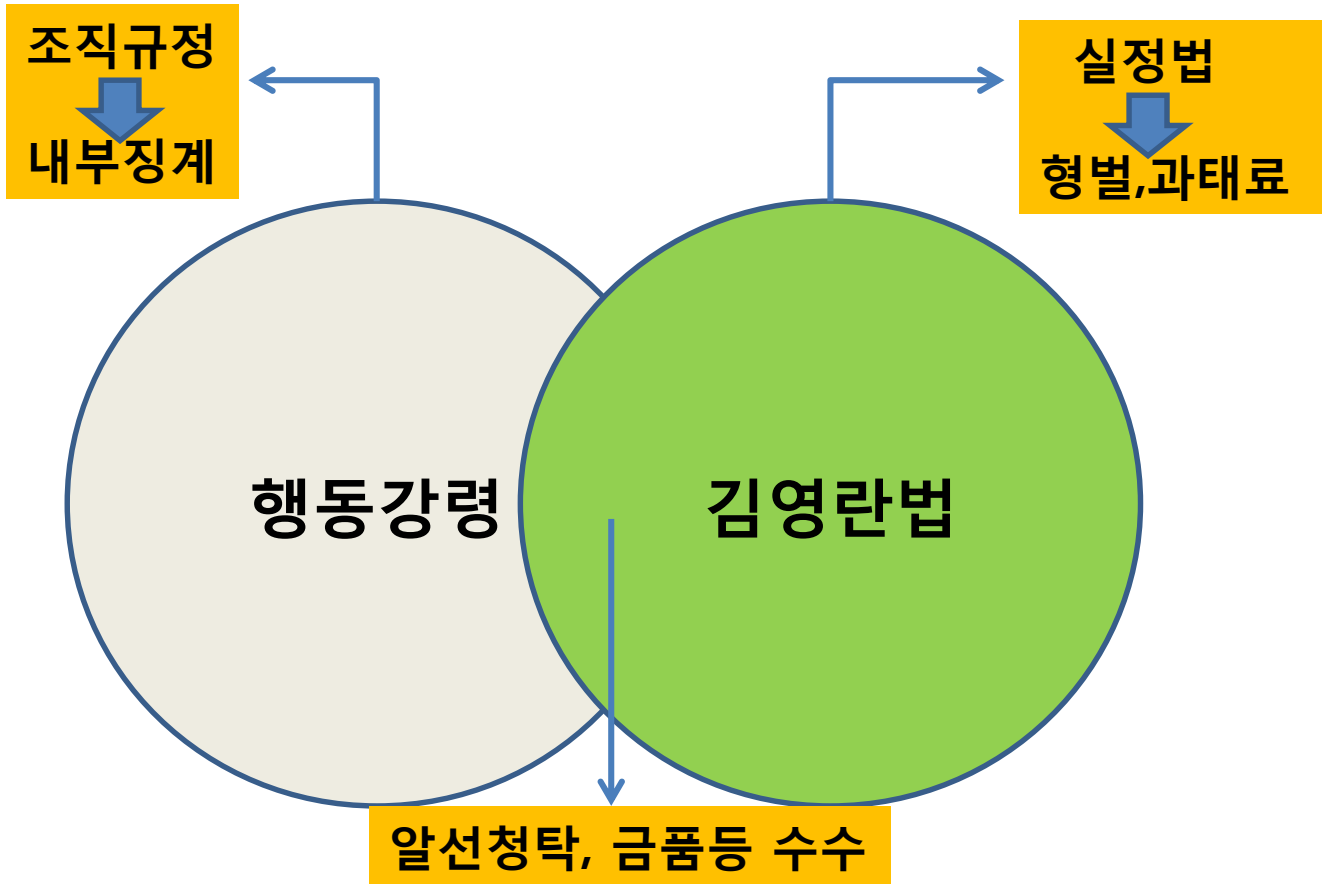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

알선 · 청탁(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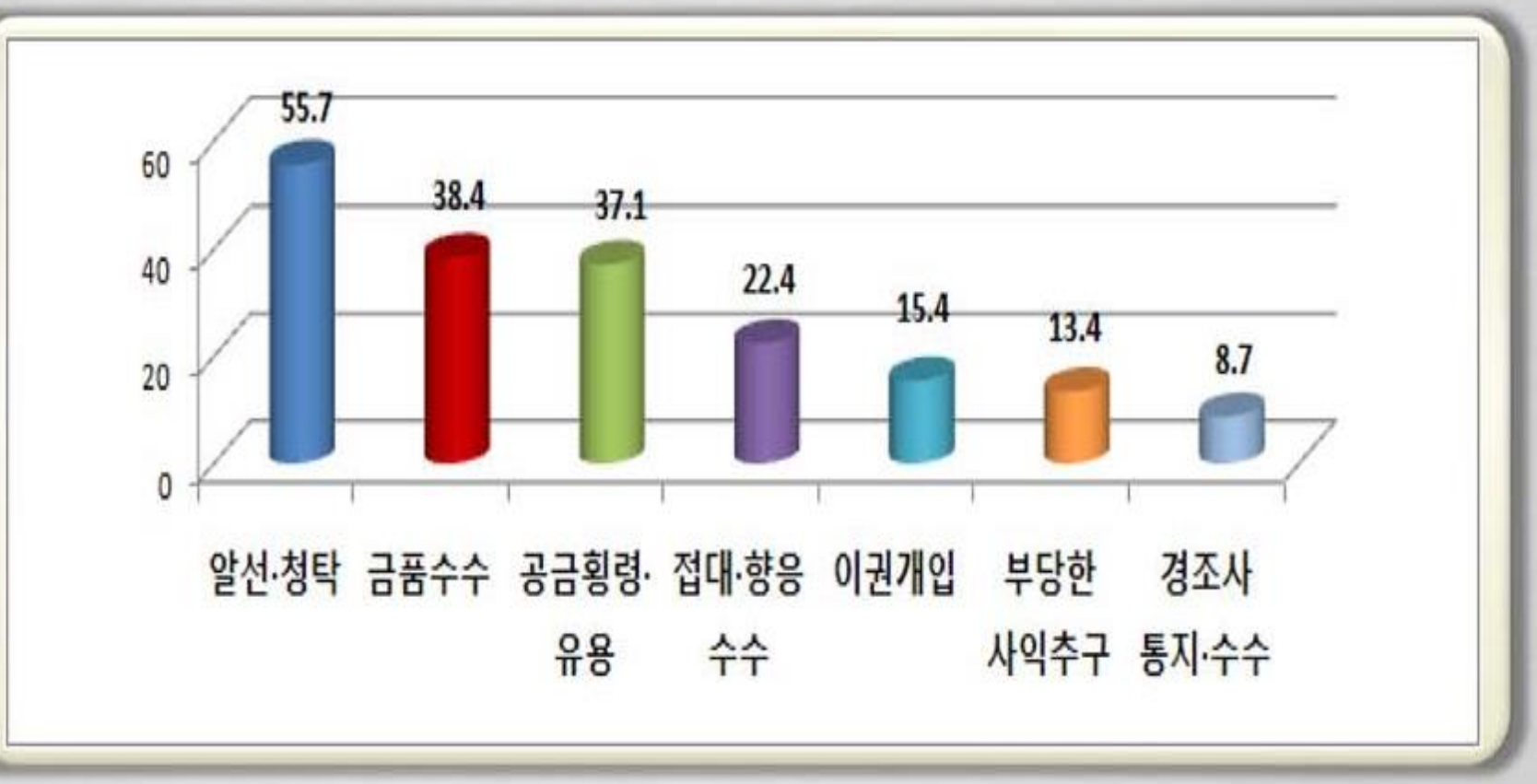

(%, 중복응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2014)

2.적용 대상

1)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학교법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행정·입법·사법 등 정부 및 공기업 등(공공기관)+사학, 언론사 등 (일부 민간기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법 적용대상 기관(40,919개 기관)

('16. 9월 기준)

분 류	세 부 현 황	
중앙행정기관 등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6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개	51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광역(17개), 기초(226개), 시도교육청(17개)	260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319개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321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3개 학교는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21,201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1개 법인은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1,211
언론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신문사업자(6,149개 기관)**	17,210
총 계		40,919

2) 개인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공직자 등 대상자수 추산(40,919기관 약 400 만명)

- **법 적용 대상이 당초엔 민법상의 가족 범위였지만 국회에서 배우자로 한정함으로써 당초 추산되던 1,500 만명에서 400 만명 정도로 감소**

<대상기관 확대 배경>

- KBS, EBS는 공직유관단체➔ MBC, SBS, 일간지 등 언론기관은 활동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

- 성적 조작, 촌지, 입학부정 등 국민의 관심과 부패심각성을 감안, 국공립학교만 규제하는 것 문제. 공적 책임은 사립학교와 구별할 수 없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원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

※ 공공기관운영법 제24조제1항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와 감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직원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ㅇ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ㅇ파견직원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ㅇ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공직유관단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공무수행사인의 유형(법 제11조제1항)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행정기관위원회법 제2조제1항)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 규칙 포함)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 훈령 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가 위임 위탁받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3)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 심의 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 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인증 등도 포함

※ (예시)「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ㅇ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3. 부정청탁의 금지

1) 금지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청탁결과에 관계 없음)**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또한,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부정청탁행위란 법상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직무는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정청탁 15개 유형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적으로 규정

1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3) 부정청탁 예외사유 7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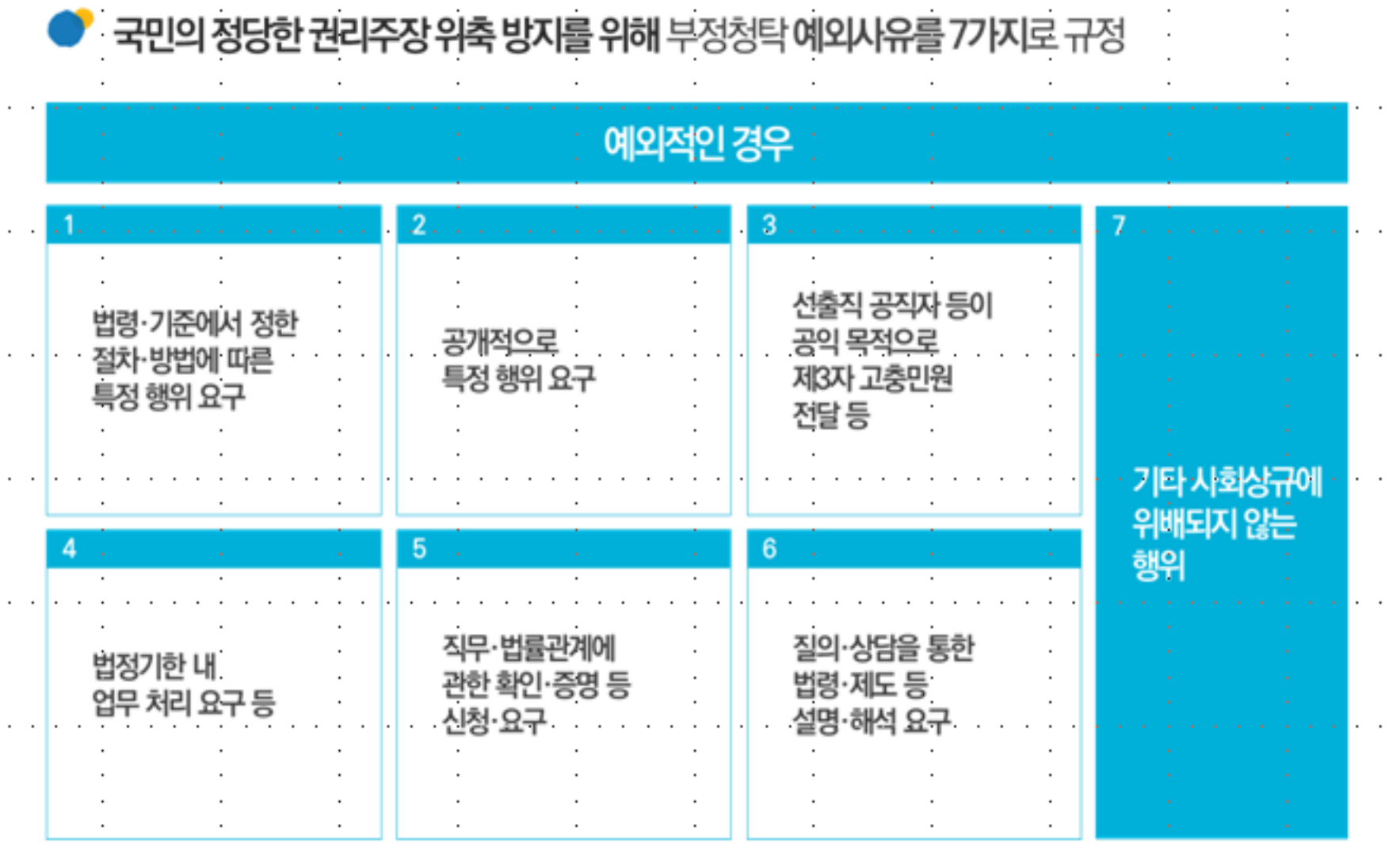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예외사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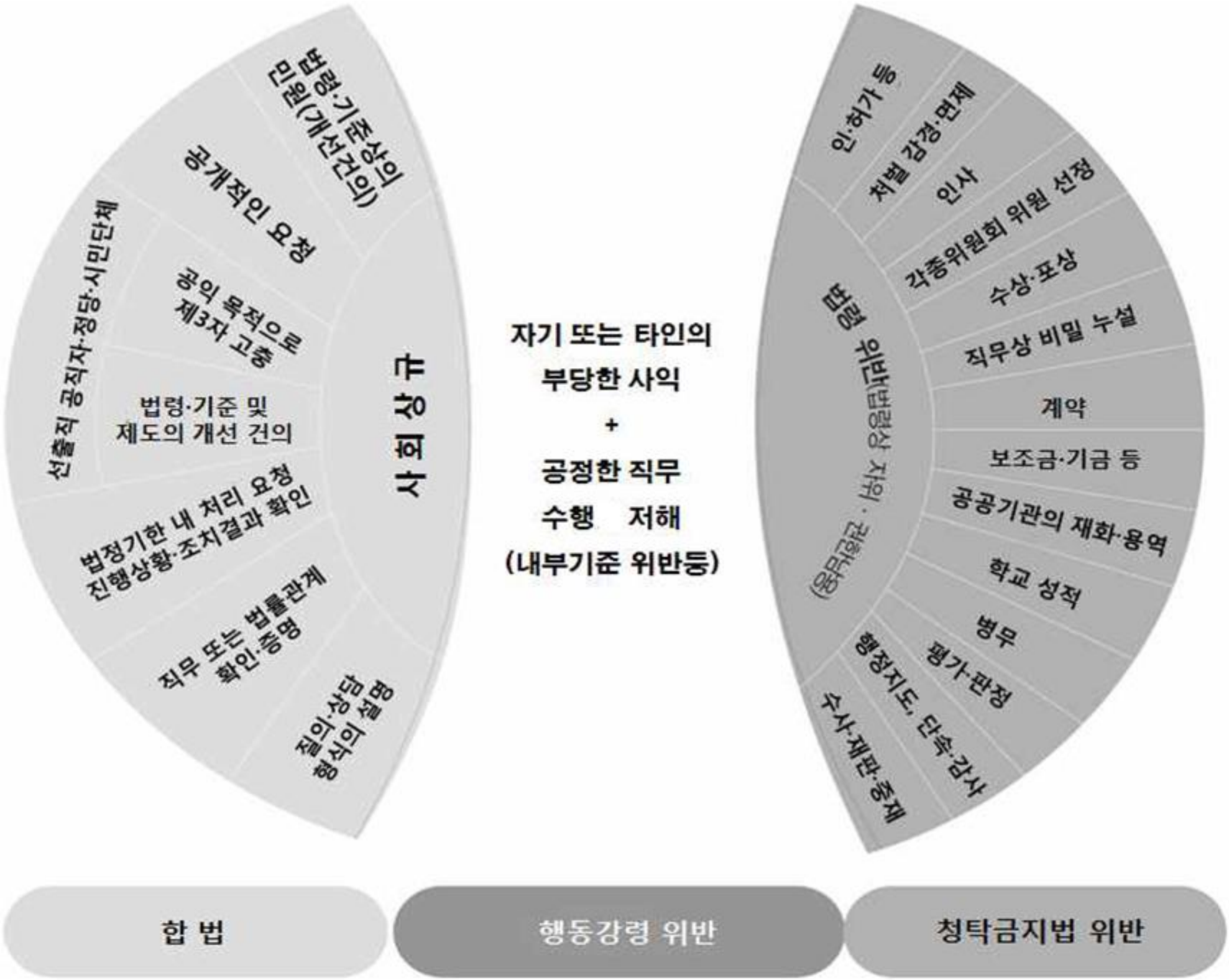

법령·기준상의 민원(개선건의)
공개적인 요청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
법령·기준 및 제도의 개선 건의
법정기한 내 처리 요청 진행상황·조치결과 확인
직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증명
질의·상담 형식의 설명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사회상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사익
+
공정한 직무
수행 저해
(내부기준 위반등)
인·허가 등
처벌 감경·면제
인사
각종위원회 위원 선정
수상·포상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
보조금·기금 등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학교 성적
병무
평가·판정
행정지도, 단속·감사
수사·재판·중재
법령 위반(법령상 자위 · 권한남용)
합 법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4) 위반시 제재

< 청탁유형에 따른 제재 >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본인)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이해당사자(본인)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3자	**제 3자가 사 인**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3자가 공직자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안은 본인(직접)도 제재, 국회 논의 중 "국민의 민원, 청원 등 국민과 공공기관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최대한 보장 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일에 대하여 공직자에게 직접하는 일체의 부탁, 청탁은 위법이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함.**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OO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A**는 **B교수**가 강의하는 수업에서 D학점을 받았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여 재수강의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A는 B교수를 찾아가 이미 성적처리가 완료된 것은 알고 있으나 자신의 취업을 위해 B학점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한 경우**

● **학생 A** (=이해당사자) ● **교수 B** (=직무수행자)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의 금지

복수의 제3자를 통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00구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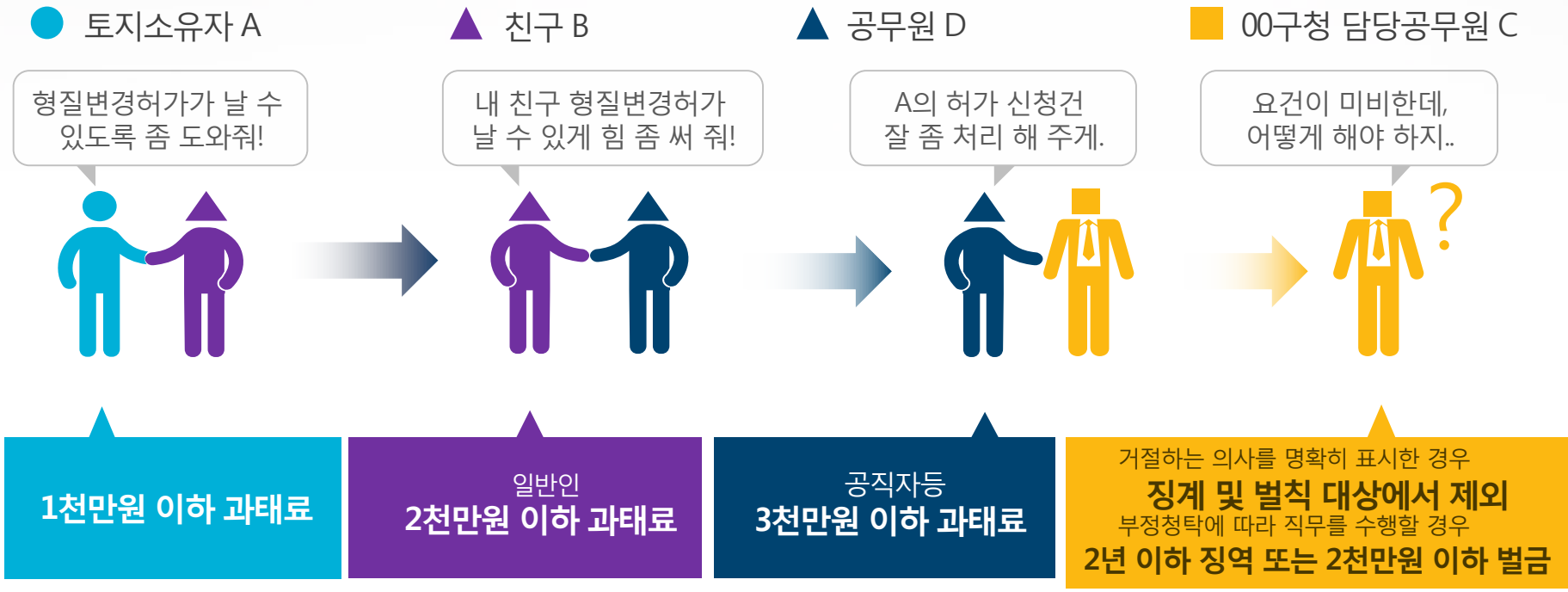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건설회사㈜ 소속 직원 A가 건축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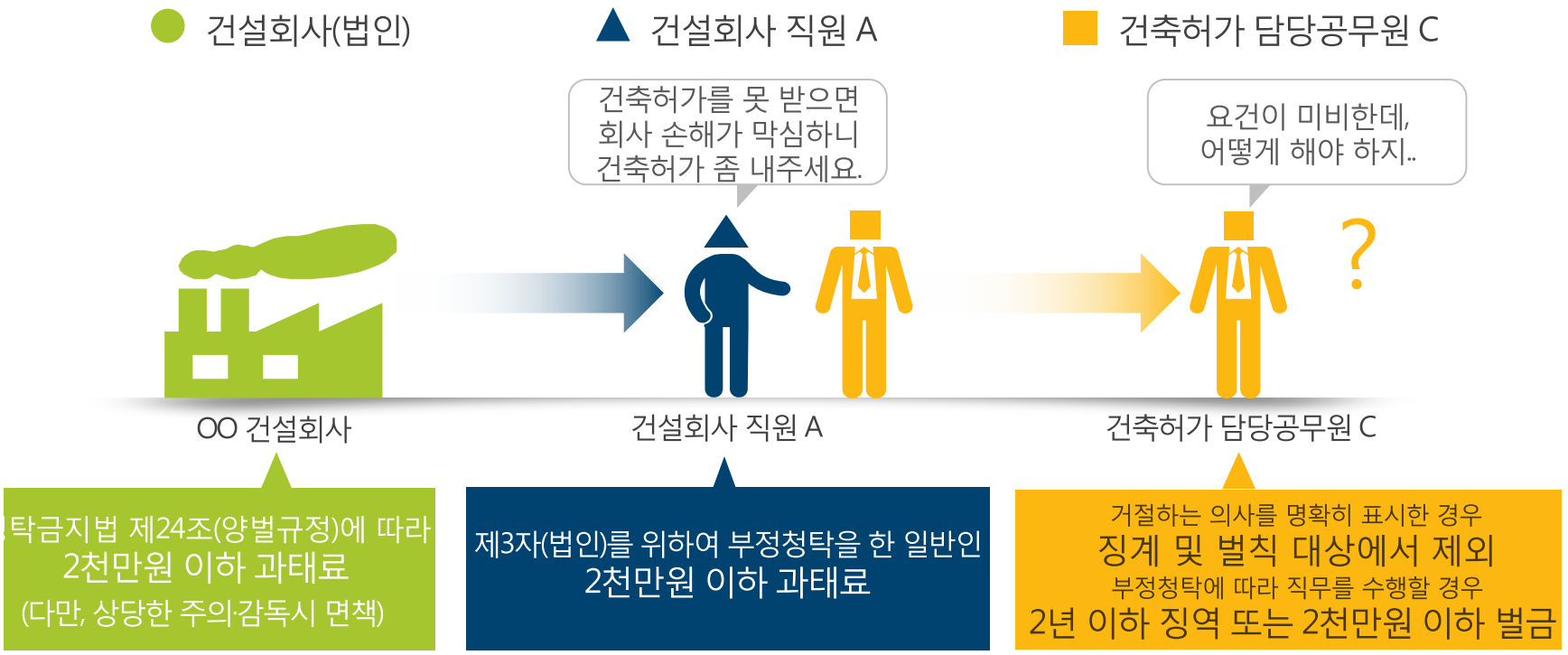

Q. 공직자 등이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인사 등 부정청탁을 하였을 경우?

A. 직접 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법(제5조) 위반으로 징계대상에는 해당(민간인은 면책)

Q. 공직자 등이 명확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나, 청탁을 실행하지도 않은 경우?

A. 청탁결과에 관계없이 청탁자는 위법, 공직자등은 청탁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절차 의무"를 밟지 않았기에 소속 조직에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

※ 사회적 상규 사례: **적법성을 전제로**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 편의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등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5)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를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유(제7조제5항)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는 직무 수행 가능

공직자등

부정청탁 받을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신고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조치사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

- 직무참여 일시정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전보

부정청탁 확인 절차도

1단계 (예외사유 진단)	◆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7가지 예외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진단(check list 1) ◆ 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위이므로 추가 진단·확인 중단
2단계 (대상직무 진단)	◆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인지 여부에 대한 진단(check list 2)
3단계 (법령 위반 등 진단)	◆ 법령 위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지위·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진단(check list 3)
4단계 (직무수행 공직자등 진단)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check list 4)

※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Check List 2~4까지 진단 과정을 거쳐 모두 체크(✔)되어야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

4. 금품 등 수수 금지

1) 금지 내용

○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2) 금품 등의 유형

제2조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면제, 취업제공,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 금품 등의 가액 평가=시가평가에 준함(할인시 증빙 영수증)**

금품등의 가액산정 기준

(기준시) 행위 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액)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으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

수수 금지되는 금품등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금품 등 수수 예외조항

1.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8조제3항의 2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김영란법' 시행령안
접대·선물·강연료 상한액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안 (김영란법 시행령)
음식물 (식사대접)	3만원	→	3만원
선물	규정없음	→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	10만원

강연료 (시간당)

	현행		제정안
공직자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4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	공직자 장관 50만원 차관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까지 허용)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직원 20만원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까지 허용)
언론인·사립학교교원			100만원(시간당),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 관련 강연 시 1회 100만원으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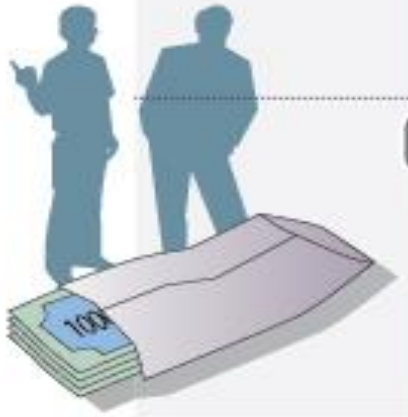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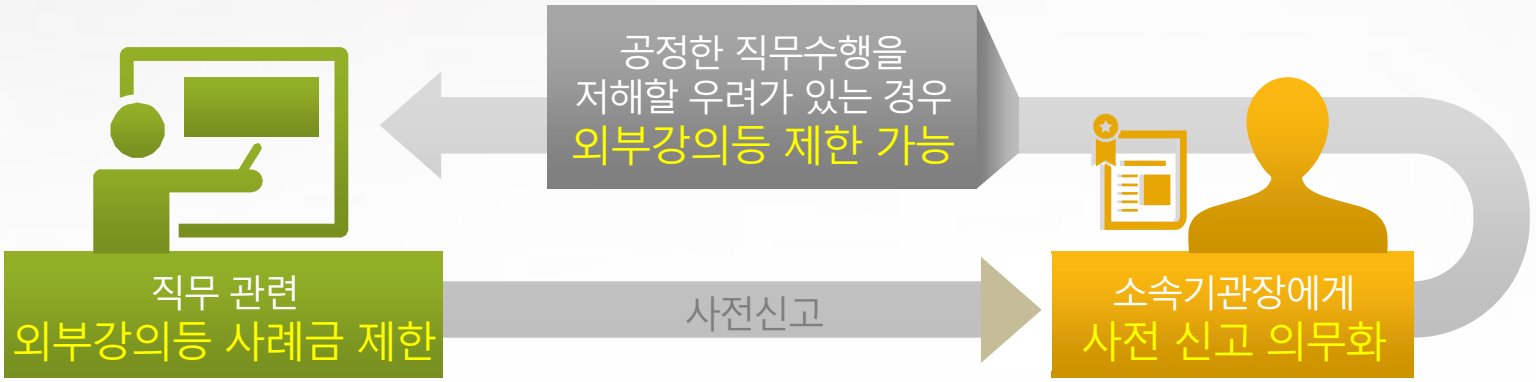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 강연 기고 외에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용역 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서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 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외부강의 상한액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하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문		○
다른 경우	불문			○

3)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사례> 지자체 건설 심의위원 건축사 A는 ◇◇건설회사(주)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금품등(70만원 상당 양주, 30만원 상당 상품권, 30만원 상당 식사의 합계)을 받았음

- 건축사 A는 임직원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았으나, **금품등의 출처 및 실제 제공자는 ◇◇건설회사(주)**임. 건축사 A가 임직원 B, C, D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과 심의대상 처리라는 목적의 관련성이 있어 동일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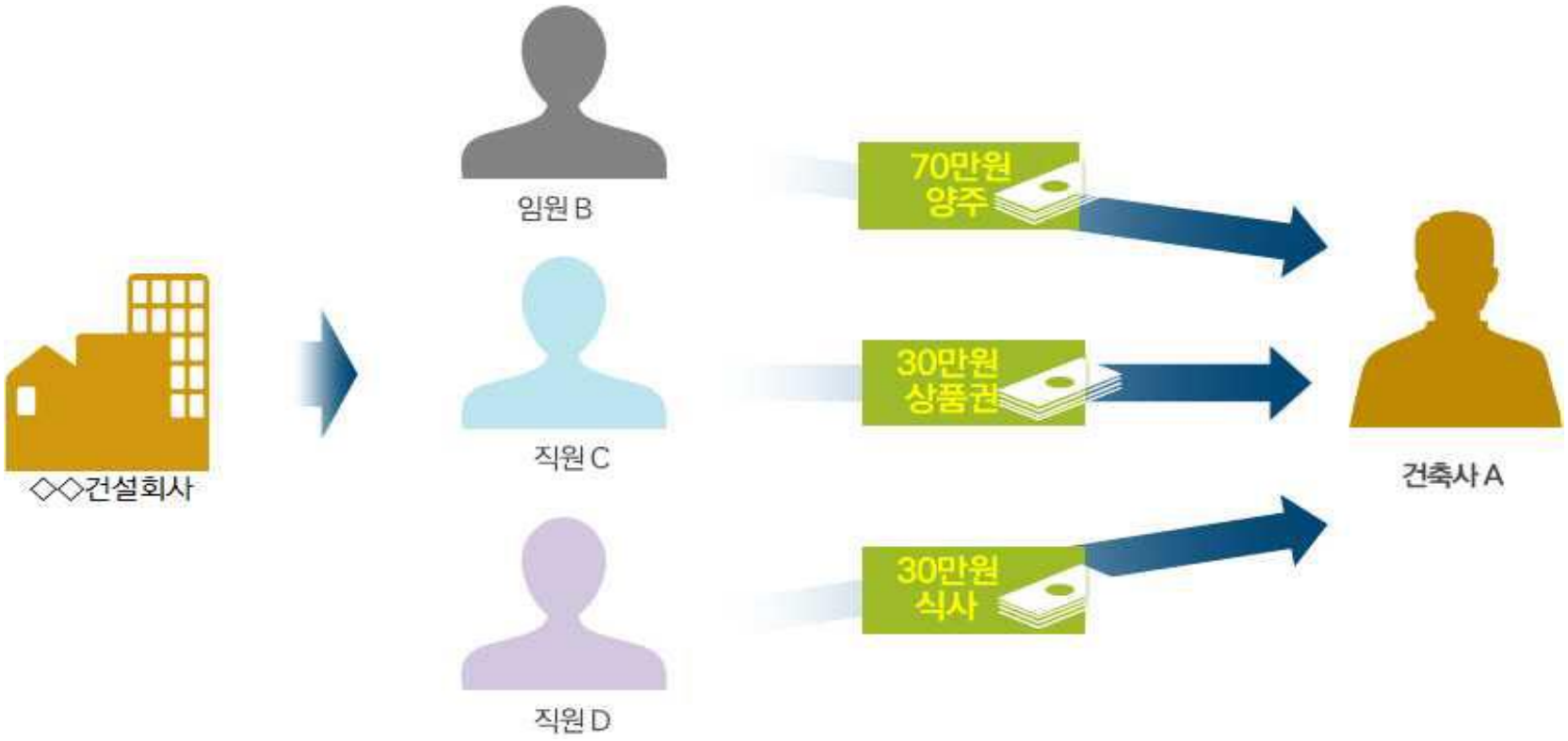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

건설 관련 서울시 ○○과 과장인 A는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주라고 하면서 1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 (A는 B와 아무런 직무 관련이 없음)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甲 시립대학교 교수 A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동안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00구청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내었고, 초등학교 동창회장 C가 참석하여 동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제재 대상 아님

금품등 수수 금지

형사처벌 대상인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시청이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4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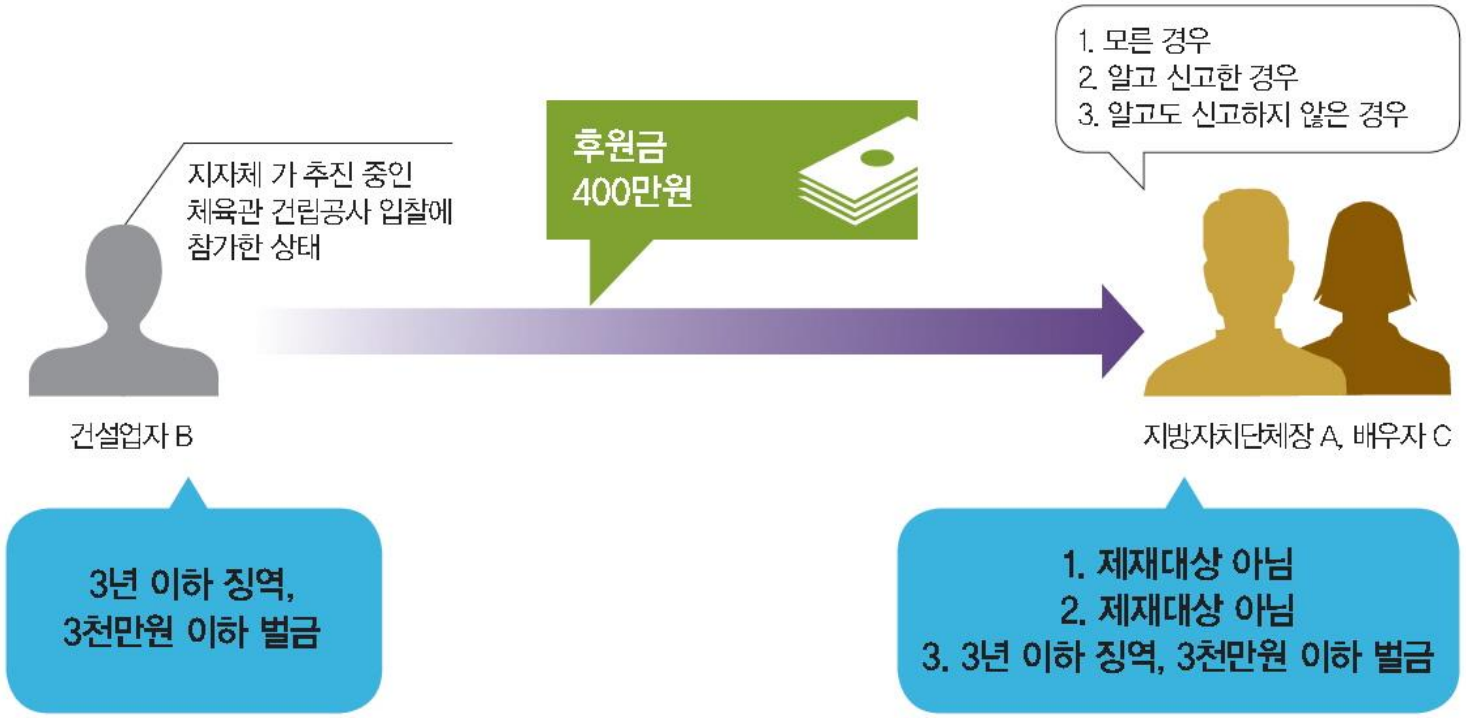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대기업 직원 B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사무관 A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데, 대기업 직원 B가 여자 친구인 사무관 A의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

제재 대상 아님

Q. 고교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관련업체를 운영하는 선배를 만났고 선배가 모임 식사비를 계산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Q. 내부직원들 또는 팀 단위의 교류나 회의 등에 따라 식사를 할 경우 1인당 3만원이 넘어가는 식사비용을 회의를 주관한 팀이 지불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Q. 결혼식에서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자신이 낸 축의금을 공제하고 3만 원 넘는지 계산하는 것인지?

Q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함께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자가 계산하고 초과 부분은 공직자등이 계산하면?
A.예를 들어, 직무관련자와 1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 내인 3만원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2만원에 대해서는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님

Q.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Q. 경조사의 범위는?
A. 결혼과 장례에 한정: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장례
-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Q 가액기준(5만원) 초과 선물을 수수한 경우 기준 초과부분이 아닌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A 가액기준 초과 선물을 수수한 경우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체를 반환해야 함

Q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 부조금과 선물 음식물을 함께 받은 경우?
A 합산액은 각각 5,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음식물, 선물도 가액기준인 3만원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4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1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5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대통령으로 예외 허용된 음식, 선물, 경조비 가액의 한계
-예외로 허용된 금품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음. 목적 외라면 예외 인정 안됨(즉 당연한 권리 아님)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 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깊이 따져봐야 함. 특히,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 상 뇌물죄)이므로, 형법을 준용하는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규정의 성격상 가액범위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
-계약이나 입찰중인 직무관련자, 담임교사와 학부형, 인허가 신청중 민원인 등

4) 수수 금품 등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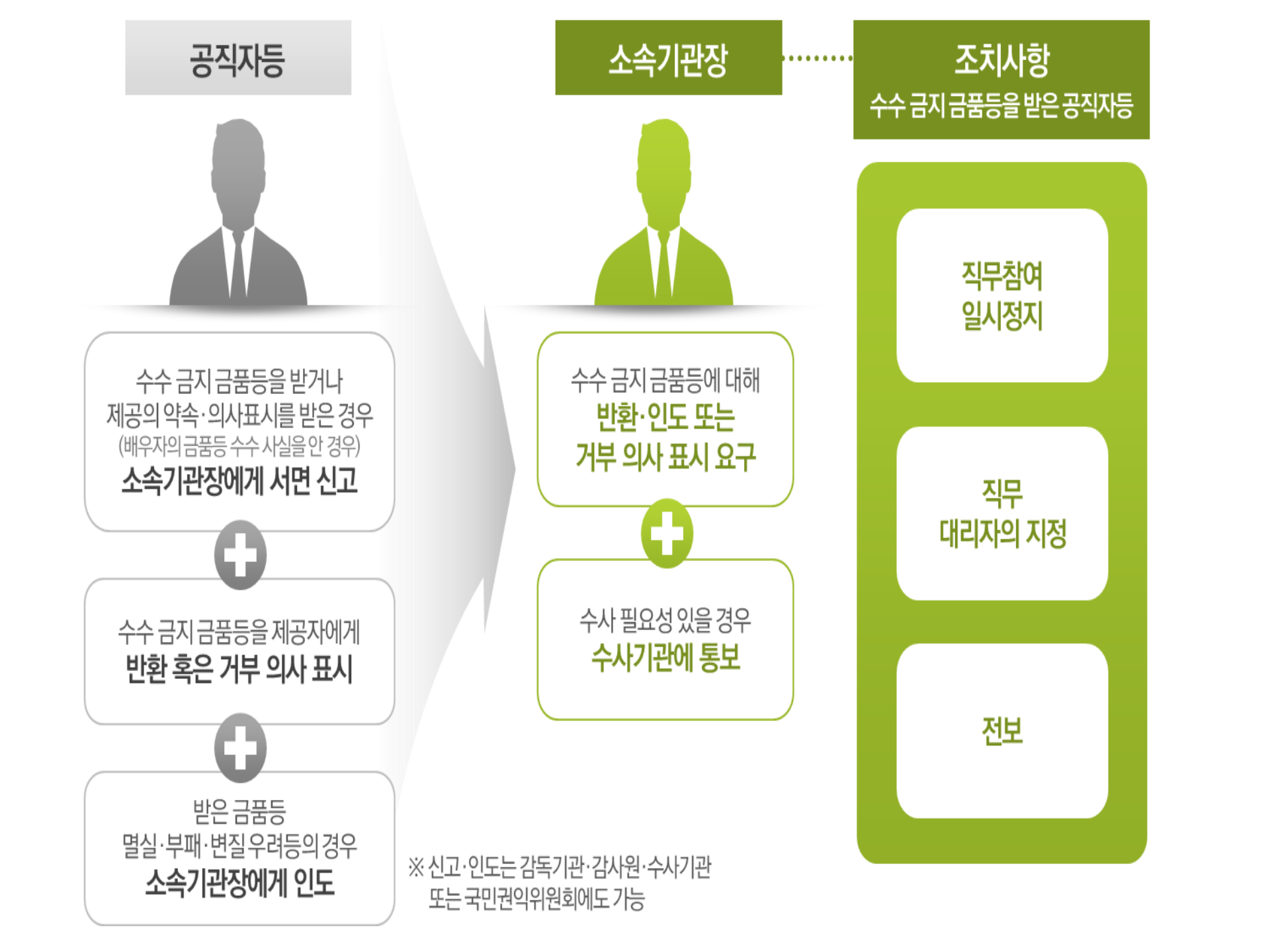
공직자등
소속기관장
조치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받은 금품등
멸실·부패·변질 우려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 신고·인도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5) 위반시 제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금품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의 경우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회 1백만원 이하의 경우 과태료>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5. 신고와 징계

1)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조사기관은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하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처리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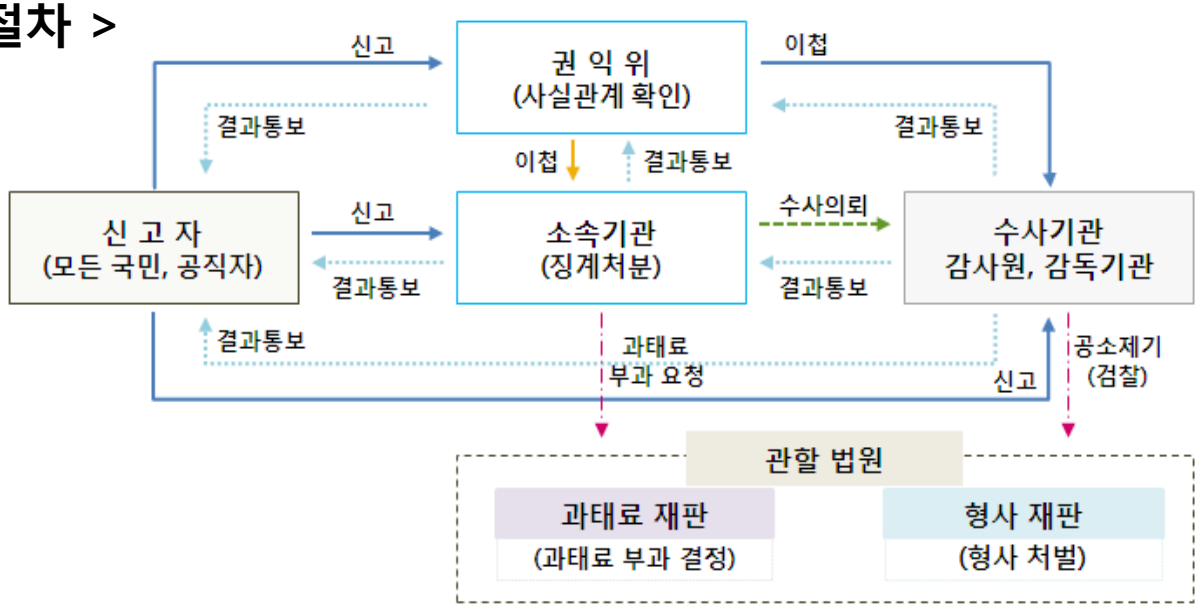

2)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15조 3항에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경**

3) 징계

○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 법 위반시 내부징계(2중 처벌), 신고 등 의무명령 위반시 징계

신고자 보호 · 보상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신고자 보호

- 신고자 비밀 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 신고자 신변보호
- 신고자 책임감면

신고자 보상

-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손실 방지,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지급 가능 — 2억
-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신고자의 신청 → 보상금 지급 — 30억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부패방지법 준용

6. 공직자 등의 대응 및 실천과제

김영란법 十誡命

1.나를 지켜주는 법임을 확신하라

2.금지내용과 예외사항, 신고절차를 숙지하고 공유하라

3.적극 실천하고 적법한 영역을 개발하라

4.청탁을 받으면 명확하고 정중하게 거부의사를 전달하라(조항활용)

5.요건이 발생하면 신고는 즉시하라

6.예외조항은 깊은 의미까지 검토하라

7.애매한 사항은 내 판단보다 당담관과 상담하라.

8. 적극적인 대민 협력을 추진하라(정보공개, 공개협의, 열린소통)

9. 직무관련자와의 협의문화를 탈바꿈하라(더치페이, 在廳奉民 등)

10.다른 영역으로 청렴실천을 확산하라(청탁,금품수수➔공적 자산,이익충돌)